退溪 李滉의 時政論考**

榮 韓 國*

-•目 次•-

I. 序 言

Ⅱ. 16世紀 朝鮮社會와 士林의 位置

Ⅳ. 內政論 V. 對外政策論

Ⅲ. 資料와 行蹟

VI. 結 語

I. 序 言

퇴계 이황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주로 그의 철학적인 업적을 통해 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가 평생을 거의 성리학에만 盡力하였고, 또 이 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극히 온당한 경향일지도 모른다. 하 지만, 조선왕조에서의 대개의 학자가 그러했듯이, 이황도 당대의 관인 이었고, 또 사림을 이끈 대표적인 지성의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관인 으로써, 또 지성으로써의 그의 활동 및 의식이 추출ㆍ이해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本稿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그 초점을 그의 時政論에 맞추어 본 것이 다. 그의 시정론의 분석 · 고찰을 통하여 그가 지녔던 시대의식과 이에 바탕하였을 경세관을 살피고, 아울러 그와 활동을 같이 하였던 당시 사 림의 정치적 주장도 들어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철학도

^{*} 인하대 사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2호 (1979) 게재논문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학문이므로, 이러한 考究作業은 그나 그와 활동을 같이 한 사림의 철학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일조가 되리라고 믿는다. 江湖 諸賢의 批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追記: 本稿 작성도중에 朴鍾鴻박사의 「退溪의 時代的 背景」(退溪先生 四百周忌紀念事業會編, 退溪學研究, 1972, 서울대학교 출판부)를 접하게 되었다. 拙稿가 이 玉稿의 논지를 어지럽히거나 않을까 저어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약속된 것이어서 부득이 집필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 朴鍾鴻박사의 上記 玉稿를 참고하기 바란다.

Ⅱ. 16世紀 朝鮮社會와 土林의 位置

조선왕조는 그 건국으로부터 경국대전의 반포(1471)에 이르기까지 근 1세기에 걸쳐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15세기 말엽에 이르러서야 중앙집권을 지향한 왕권에 부응하는 勳舊‧戚臣의 세력이 정계를 완전 장악하는 權貴層의 고정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안정에는 또다른 측면에서의 조선사회의 동요가 곁들어지기도 하였다. 집권층의 권귀화에 대한 견제세력의 결여에서 빚어진 필연적인 현상의 일단이었다고 보겠는 바, 직전제의 폐지, 대토지소유로의 토지겸병과 병작반수적 수탈관행의 성행, 대역납포 및 방군수포의 전개 등등이 그러한 현상들이었다. 이들현상은 서로가 표리를 이루는 가운데 官紀의 문란, 田制의 파탄, 농민의 離農·流亡 등과 같은 양상을 빚어내면서, 傾國의 요인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도학적 성리학으로 소양을 쌓은 이른바 사림의 중앙정계에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傾國的 양상들의 비판을 통한 훈척세력에 대한 견제세력의 형성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들—초기에는 주로 嶺南土流였다—의 혈통적 정신적 전통이 애당초

조선조의 건국세력과 상반되었던 데서 그러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이 대체로 중소지주층이었던 데서도 대지주화하는 훈척세력과 현실적으로 대립할 소지를 지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정신적 경제적 기반에서 형성된 이들의 자치적 성향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훈척세력과 정치적 상충을 면하기 어려운 바탕을 지니고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金宗直의 등용에서 비롯된 사림세력의 중앙정계로의 진출은 곧 훈척세력과의 격심한 충돌을 빚어 갔다.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일파는 먼저 그들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유향소의 복립운동을 벌였다. 유향소 조직을 통한 유교적 향촌질서의 재편기도로 여겨지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훈척세력의 승리로 이끌어졌다. 유향소가 관권에 의하여 장악되는 양태로 끝맺어짐으로써 사림일파의 본래의 기도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1) 여기서 그들은 치자의 도덕적 양심과 청백적생활을 강조하는 이론의 전개를 통하여 대훈척투쟁을 벌여 갔다. 하지만, 이 분쟁역시 무오사화(1498)와 갑자사화(1504)라는 정계에서의 사림제거작업을 통하여 敗退하고 말았다.

훈척세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써의 사림의 첫번째 등장은 이로써 일단의 종지부가 찍혀졌다. 그러나 사림의 세력은 재야에서 날로 확대되어 갔다. 영남 일역을 벗어나 기호지방으로까지 그 세력이 파급되어 간것이다. 1515년 (중종 10년)으로부터 정계에 다시금 진출하기 시작한趙光祖일파에 기호출신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이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광조의 등용에서 형성된 두 번째의 사림정치세력은 성종조에 비하여 그 기반이 보다 강성한 것이었다. 까닭에, 그들의 정치투쟁도 보다 강렬하였다. 반훈척적 성격이 노골화되었으며, 그 수단도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그들의 투쟁은 김종직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과 그 성격을 같이하는 여씨향약의 보급운동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하지만, 그 궁극의 목표 는 그들이 진력하여 마지않은 국왕의 哲人君主的 개조작업에 연결되는

¹⁾ 李泰鎮 「士林派의 留鄉所復立運動」(震檀學報 34. 1972).

것이었다. 국왕에 대한 훈척세력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려는 기도 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기도 역시 상충관계를 이루었던 훈척세력의 득세를 끝내 좌절시키지를 못하였다. 오히려, 기묘사화(1519)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敗退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두차례에 걸쳐 대두되었던 사람의 정치세력은 이와같이 그것이 훈척세력에 대한 유일한 견제 내지는 반대세력이었던 데서 모두 훈척일파에 의하여 정계로부터 도태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 더욱 강성하여진 훈척세력은 선조의 등극(1567)에 이르기까지 계속 집권하면서, 그들나름의 政爭을 벌려갔다.

그렇다고 이 동안에 사림의 정계 진출이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집권세력이 바뀔때마다 표방되었던 새로운 기풍의 진작이라는 허식이 사림의 등용을 간간히 일구어 주었었다. 金安老의 실각(1537)을 계기로 기묘사화때 축출되었던 金安國·李彦迪등이 등용(1540)된 것도 그하나의 예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등용된 일부 사람도 그 대부분은 훈착간의 정쟁에 휘말리어 희생이 강요—을사사화(1545) 및 정미사화(1546)—되기가 일수였다.

이리하여 16세기의 조선사회는 傾國의 요인을 배태한 채로 겉잡을 수 없는 변질의 도가니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훈척의 독선을 견제할수 있었던 유일한 세력인 사림의 의기는 저하되고, 글 읽는 소리가 화근을 부르는 소리로 여겨지는 암담한 사회상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사림이 정치·사회에의 직접적인 참여·봉사에 보다는 학문의 연구에만 몰입하게 된 것도 이러했기 때문이었으니, 성리학의 일대萬開가 이 시기에 마련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뒷날 柳壽垣은이 시기의 사림의 정치참여를 아쉬워하며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鳴呼 以此而望做國家之實政 難矣 禮服時律文詞 固無足增損於 治道 至於學問 固出治之本也 但我東學者 實無眞得 類多虛名 如退溪學問 若試於政事 豈無其效 而時無可爲 終身退藏 謂之淑 世善俗 以惠後學 則可矣 其於國家實政 未嘗得力 靜菴固可有 爲 而一時諸賢 多不識時義 決無做事之理 然則我朝未得儒者之 效矣(「迂書」卷一 論備局)

Ⅲ. 資料와 行蹟

이황은 위와 같은 16세기 조선사회에 태어나서(1501:燕山 7年), 그속에서 성장하고 仕宦하다가 세상을 떠난(1570:宣祖3年) 대표적인 지성의 한 사람—그것도 정치적으로 가장 被禍가 컸던 영남 사림의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서 그 어떤 의욕적인, 혁신적인 시정·개혁론을 기대을 기대하여 봄직도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저서나 행적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기대를 거의 걸어 볼수가 없고 있다. 겨우, 1568년(宣祖1年)에 製進한 時務六條와 經筵啓 節를 비롯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황은 16세기의 난세속에서도 비교적 오래고도 순탄한 사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찌기 進士試(1527~28)를 거쳐 대과에 급제(1534)한 이후, 간간히 사직·하향하는 일이 있기는 했어도, 근 40년 동안을 줄곧 사환한 것이다. 그리고 그 관직도 3사(홍문관·사헌부·사간원)와 성균·예문관계를 거쳐, 공조·예조판서(1566~67)와우찬성 및 대제학에 이르고 있다. 또 외직으로는 단양 및 풍기군수(1548)를 지내고 있고, 암행어사(1542)와 迎接都監 郞廳(1545)으로 차출된 바도 있다.3) 그런데도 그에게서 두드러진 정치활동이나 시정·시폐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어떠한 까닭에서 일까?

²⁾ 退溪先生文集 권6의 「甲辰乞勿絶倭使疏」 및 「戊辰六條疏」와, 권7의 「戊辰經筵啓箚一」그리고 권9~40의 書들에 보이는 몇가지가 그 대개다. 본고 3 참조.

³⁾ 退溪年譜 참조.

혹자는 이황이 애당초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학문에만 몰입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그의 등과시의 연령이나 그 뒤의 사환경력으로 보면, 한마디로 그가 정치에 무심했었다고만은 단정할 수가 없으리라 본다. 그가 정녕 정치에 무심했다면, 뒷날 간간히 명분을 들어 사환의 진퇴를 가렸던 그가 뒤늦게(34才) 등과하여 金安老의 독천하임에도 入仕한 까닭을 찾을 수가 없고, 또 훈척집권하에서도 줄40년 동안을 곧 정계에 몸을 담았던 이유를 살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학문에 못지 않게 정치에도 지대한 관심을 지녔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리라고 본다. 다만, 그것이 그 어떤이유에서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황은 일찌기 조광조를 다음과 같이 평 한바 있다. 즉

天恣信美 而學力未充 其所施為 未免過當處 故終至於敗事 若學力旣充 德器成就然後 出而担當世務 則其所就 未易量也……堯舜君民 雖君子之志 豈有不度時·不量力 而可爲者哉.4)

라고 한 것이니, 경세가는 担務에 앞서 반드시 학·덕을 충족히 쌓아야하고, 担務(施政)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시세와 역량을 헤아려서 행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돌이켜 보면, 정계에 임하는 그의 신념이기도 하였겠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世務의 担當에 경주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硏學・修德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필요를 통감하고 있었고, 또 급진적이고도 强劫的인개혁・투쟁에 보다는 점진적이고도 자발적인 시의에 따른 개혁・개선에 노력하고 기대하여야 할 것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그의 출생과 수학에서 연유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황은 안동의 진사 李埴의 막내로 태어나, 그의 숙부 李堣에게서 수

⁴⁾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학하였다. 영남 사림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수학하였던 데서 그는 도학 풍의 성리학을 일찍부터 익힐 수가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하였던 데서 지성으로써의 그의 고민은 한층 더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학문과 시의에 이해가 깊어감에 따라, 무자·갑오년의 사화며 기묘년의 被禍가 더욱 그의 뇌리를 압박하였으리라 믿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학문과 정치의 합일점을 터득하고, 군·민의 철저한 교화를 통한 저변세력의 확대에 기반하는 근본적이고도 자생적인 사회개혁에 매진하고 기대하는 신념과 태도를 지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태도는 그 뿐만 아니라 수차의 被禍를 입은 당시 사림의 공통된 것이 아니었나 여겨지니, 이 무렵의 사림의 동향, 즉 훈척의 독천하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계로 진출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개혁에 보다는 유가적 왕도정치의 이론을 설파하는 한편, 서원의 설립과 향약의 보급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다.

推斷하건데, 이러하였던 당시 사림의 태도와 이황의 신념이 그로 하여금 金安老의 독천속에서도 入仕하기를 주저치 않게 하였고, 또 그로 하여금 조용히 仕宦・說論하면서 스스로의 학문과 경륜을 키워가게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의 가장 위대한 학적 업적으로 지적되는 사단 칠정설이 바로 옳바른 행위, 선한 행위가 누구에게나 가능함을 입증하는 철학적 표현이었다는 것도 한갖 우연한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데, 이황이 1568년에 올린 시무육조소는 그 내용이 1541년(중종 36년) 4월에 그가 홍문관 교리로써 부제학 이언적등 11명의 관원들과 함께 상소한 시무십조소⁵⁾와 거의 동일하고 있다. 후자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 훈척정치의 실정을 공박하는 논지를 아우르고 있는데 대하여, 전자는 그 조목을 함축하여 원리・원칙론만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본고3참조). 이러한 양상은 그의 주장・시국관이 그만의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묘사화 이후의 사림 전반의 공통된 것이었으리라는 점을 뒷바쳐 주고 있는 동시에, 그들이 집권한 선조초에도 그

⁵⁾ 中宗實錄 권95 中宗36년 4월 戊午 條, 본고 3 참조.

들의 지향 및 시국이 그대로 유지되고 심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이제, 위와 같은 이해를 지니고서 이황의 시국관과 지향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중종조의 시무십조소를 중심으로하여 그의 시정론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결과적으로는 그를 포함한 당시 사림파의 대체적인 시정론이 되기도 하리라 본다.

IV. 內政論

중종36년 이황이 홍문관원들과 함께 상소한 시무십조소는 1綱 9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致中和」(1綱)와「宮禁不可不嚴」

「紀綱不可不正」「人材不可不辨」「祭祀不可不謹」「民隱不可不明」「敎化不可不明」「刑獄不可不愼」「奢侈不可不禁」「諫諍不可不納」등이 그것들 인 바, 이들은 모두가 훈척정치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현철군주에 의한 왕도정치의 확립을 위한 君王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一綱으로 제시된「致中和」는 중종으로 하여금 "中和", 즉 왕정의 대본으로 그들이 믿어마지 않는 군왕의 존양성찰하는 마음가짐에로의 勵進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황과 그 合疏者들은 당시 중종의 치세에 대하여 극히 비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治效愈邈 闕政滋多 民怨於下而惠澤愈鬱 天怒於上而災異疊見 歷觀前古之 史 災異之多且大 未有甚於此時 而亦未有甚於近年

라고 서슴치 않고 표현할 정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근원적으로 중종이 "中和之致"에 未極하고 있는 데서 찾고 있었다. 그들은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라고 풀이하면서.

大本之立 未能堅確 故達道之行 多所壅關 由是 宮禁不得有所閑而嚴 紀綱 不得有所賴而立 人材之辨 或至於混 祭祀之謹 或至於黷 民隱欲恤 而不恤 教化欲明 而不明 名爲慎刑 而冤獄尚多 名爲禁奢 而弊習自若 名爲納諫 而直言不用

이라고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중종의 "中和之致"가 이루어 지기만 하면, 뒤에서 논의하는 9개 항목의 時弊가 자연히 해소될 것이 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중종에게 요구하며 마지않은 "致中和"는 바로 군왕의 유가적인 수학·수덕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夫以殿下之明而猶有今日之憂者 無也 聖學之功 有未盡 而中和之致 有未極也

라 하여, 수학·수덕만이 오직 중화의 極功에 달할 수 있는 길임을 역설하고, 이어서 중종이

知聖學之未至 加精一之眞功 不責於人而責於己 不求諸外而求諸內 常從事 於戒愼 恐懼毋自欺 謹其獨之實

하면, "民怨"이며 "天怒"가 어찌 있을 수 있고 災變이 어찌 근심이 되겠는가하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황과 그 合疏者들의 주장은 趙光祖(靜庵) 이래로 성리학 파들이 추구하여 마지 않는 현철군주에 의한 이상적 국가사회의 건설·운영이라는 사상적 기반— 동시에 한계도 되겠다—에서 연유된 것이겠다. 하지만, 당시의 현실적인 의미로 보면,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는 그들 스스로의 세력 만회의 기도가 곁들여져 있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致中和"에 대한 史臣의 다음과 같은 衍記에서도 엿볼 수 있다.

·······袞又進言 以爲聖學旣巳高明云云 自是以後 經筵進姜 讀至二遍 輒卷 以退 上無意於問難 而下亦沮縮於進言

즉, 앞서 기묘사화 무렵에 남곤이 경연에 실증을 느끼고 있던 중종을 충동하여 경연을 無爲하게 만드므로써 중종이 수학·치정에 등한히 하게 되고, 공론(進言)이 또한 沮縮하여졌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경연의 충실, 즉 훈척을 멀리하고 선비·학자를 가까이 하면서 이들의 공론에 따른 정치만이 공도를 상실하지 않는 올바른 정치가 될수가 있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1 綱에 뒤이어 「宮禁不可不嚴」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 까닭이겠다.

성리학파에 일대 시련을 안겨주었던 기묘사화는 실로 그 起禍에 있어 궁중에서의 모함이 개재되어 있었다. 남곤·심정등의 사주를 받은 홍경주의 女 熙嬪이 禁中에서 조광조와 그 일파를 讒問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심정일파를 뒤엎은 또 하나의 척신인 金安老의 득세에도 그의 아들 禧가 駙馬로서 작용한 바 컷었다. 이황과 그 合疏者들이

自己卯以來 士林間禍敗之巨者 莫不由是而飜覆 故事關宮闈 莫不寒心

이라고 宮禁의 不嚴과 사화, 즉 자신들과의 관계를 지적·통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실정에서였다. 하지만, 그들이 宮禁을 「王化之本」으로 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는

宮禁不肅 則邪徑通於內外 正路塞於朝庭 公論阻礙而不通 邪僻眩惑而售奸 亂亡於斯 莫救矣

라고 하였듯이, 宮禁의 不嚴에서 말미암은 正路·公論의 폐색 ,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국가적 위기등을 예방·제거하려는 정치원론적인 이유 가 아울러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宮禁의 不嚴은 따라서 기강의 不立·不行으로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紀綱不可不正」이 둘째로 지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그들은

古之爲政者 必先正其体要 紀綱是也

라고 기강의 의의를 규정하고, 이어서 그 담당 및 책임의 소재를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紀綱不能以自立 必待賢者而後立 紀綱不能以自行 必待公道而後行 夫賢者 之所在 隱然有虎豹在山之勢 公道之所揭 赫然如日月中天之明 狐狸褫魄而 遁藏 陰■望景而披釋 鳴呼 此宰相贊襄之責 而其機則在於人主之一心

즉, 기강이란 자립·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자가 나타나고 公道가이룩된 뒤에야 立行되는 것임으로 기강의 입행여부는 전적으로 군왕과公卿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상(公卿)이 贊襄(사리의 분별함이 없이 남을 따라 贊意를 표하는 것)만을 일삼고, 人主(군왕)가 틀(機)을 한마음으로 잡지 않아서, 오늘날의 기강이「狐狸褫魄而遁藏」하고「陰■殿望景而披釋」하듯 하니, 공경과 군왕이 함께 책임을 져야만한다는 비판을 곁들인 說破인 것이다. 그들은 훈척정치하의 당시 사회를,

私情勝而公道滅 法令壤而百司慢 苞苴以解之 請托以紊之 貨賂以撓之 奸猾以亂之

하는 사회로 표현하면서 「由是 一國之紀綱 幾於蕩悉」이라 통탄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이해와 비판은 바꾸어 말하면 국왕을 보필하는 인재의 등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논리로도 통한다. 셋째의 「人材不可不辨」은 紀 綱의 문란이 자연 인재등용의 공정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보다는 위와 같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二十年來 朝廷士林 每分朋黨 隨權因勢 互相勝敗 勝者爲君子敗者爲小人 附己者是之 異己者非之 旣以爲君子 則諸大夫同然是之 旣以爲小人 則諸 大夫同然非之 是豈盡昏愚而莫辨者哉 率皆畏禍而附勢也 有所論執 則大臣 率六曹言官合兩司 當此之時殿下豈不以爲物情如此哉 諸大夫之言 容有不可信者如此 故至於國人皆以爲然後 其論公矣

즉, 집권세력이 언로(公論)를 閉塞하여 人事가 不合・不公으로 일관 하여 왔고, 또 不正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맹자 가

國人皆曰賢 察之見賢然後 用之 國人皆曰不可 察之見不可然後去之

하라고 한 말을 빌리면서, 오직 군왕이 人事를 거듭 신중히 하는 것만 이 人事의 不正·不公을 방지할 수 있는 길임을 力說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獻議에는 중종이 지난 날 인물의 賢·不賢을 살피지 못했다는 책망과 함께 그들의 서러웠던 원망이 서려있는 것이기도 하지 만, 한편으로는 이제 金安老의 실각으로 겨우 조정에 다시 발붙일 수 있게 된 그들 자신의 前途에 대한 염려와 함께 특별한 배려를 期望하고 있기도 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셋째 항목을 다음과 같은 말로 써 끝맺고 있는 데서도 살필 수가 있는 것이다.

近者 賢邪稍今 朝廷稍安 但可因是而善持 豈容更鼓其異說 然人心之操捨不常 世道之翻覆無窮 於是 而尤加省念 絶偏黨之心 而守進退之公 則致中致和天人胥悅 而災不爲災矣

다음,「察祀不可不謹」은 군왕의 謹愼을 촉구하는 방편으로써 논의되고도 있지만, 주로「民隱不可不恤」에서 거론하고 있는 天災異變의 連發과 관련지어지고 있다. 그들은「民隱不可不恤」의 항목에서 現下 백성들이

近來水早爲災 饑饉荐臻 力本之民 終歲勤動 而不能救一朝溝壑之命 中人之家 十室九空 轉徙之氓 何以聊生

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러하게된 원인의 하나로 제일 먼저 祀典의 소홀을 들고 있는 것이다. 「天人交孚 鬼神降福」의 기대를 전혀 얻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니, 敝陋한 齊廬를 정결하게 하고 군왕이 親享하는 예 를 다하여야 한다는 그들의 논의에서였다. 유가의 奉天敬神思想에 기반 한 獻策이라 보겠다.

하지만, 이황과 그 合疏者들이「民隱不可不恤」에서 보다 강조한 것은 치자계층의 현실적인 對民收奪을 억제하자는 데 있었다. 그들은 이같은 時弊로 다음의 두 가지를 論列하고 있다.

- (1) 今之字收之官 鮮有慈祥悃愊之儔 率多貪暴無壓之類······所事權貴悅於 貨路 則思充其欲·······巧作名色 各筮朘削粒米 狠戾於公廩 杼抽空竭於閻里 其他邊將之割剝 諸司之侵漁 若此之類 所在皆然 使殿下之赤子 一因於天 災 再因於苛政.
- (2) 步兵水軍之疲於土木 (王子女第宅營造 極其兎傑 務勝於前 上京步兵 畿內水軍 常供其役 困弊極矣) 選上皂隷之困於重斂 傾財破産鬻盡田土 以 應其役 及其還家 無以爲業 則相率流亡 害及九族隣比怨氣極天

즉, 그 한가지는 守令・邊將들의 貧虐이고, 다른 한가지는 上番軍士・ 包隷들의 파산・유망이었다. 재향의 농민들은 權貴層에 賄賂하려는 수령・변장들의 수탈로 곤핍되어 있고, 上番한 軍士・包隷들은 왕실・ 훈척들의 사치에 따른 重斂으로 파산・유망하고 있으니, 京鄉을 막론한 대민수탈적인 苛政이 전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이겠다.

사실, 16세기의 조선사회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훈척정치의 生理라고도 할 賄賂와 사치의 성행으로 인하여 크게 뒤흔들리고 있었다. 수령·변장은 물론, 京職의 諸官도 그 천거가 오로지 賄賂에서 결정되었던 데서 이들의 대민수탈과 公廩橫領은 이미 천거 당초에 마련되고 묵인된 바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이황과 그 合疏者들이

夫親民之官 莫重於守令 其選不可不謹……而卿大夫不体聖心循私害公 ■ 薦庸鄙 首毀良法 夫薦之者之薦此人 非爲此人也 將以自利也 然則割剝軍 民者 非守令辺將之割剝也 乃朝廷之割剝也

라고 지적하면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훈척정치에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실정에서 였겠다. 그리고 上番軍士와 畿內水軍의 營邸工事에의 使役과 上番皂隸에 대한 重斂은 軍丁・皂隸의 경제적 몰락뿐 아니라, 이른바 "代役納布"와 "放軍收布"의 예를 확대시켜 조선조 전기의 軍制, 즉五衛 및 鎭營의 체제를 虛沒化시켜 갔으니, 그 폐해는 끝내 군제의 붕괴와 농촌의 피폐에까지 미쳤던 것이다.6) 그리하여 군제의 붕괴와 군정의 몰락은, 뒤에서 논술하는 바와 같이, 당시 倭・野人의 作亂에 소극적인 대처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또 뒷날 집권하게 되는 성리학파가 훈척정치로부터 물려받은 최악의 난제로 등장되었다. 이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속에서 맞이한 임진년의 왜침(1592)과 정묘・병자년(1627・1636)의 胡侵은 임기적인 제도들을 속출시켜, 이에서 빚어진 군제의 亂脈相은 조선조 후기의 명실상부한 지배층을 이루었던 성리학파가 지니는 최대의 약점이 되기도 한 것이다.

여섯째로 獻議하고 있는「敎化不可不明」은 훈척정치하에서 부정해진 土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거론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훈척 세력의 학풍이 전통적으로 그들과 背馳되어 온 데 대한 비판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들은

治國之道 有二焉 刑政與教化而己 刑政所以制之於外也 教化所以感之於內也……近年以來 教化不明 士習不正 節義廉恥 掃也盡矣

⁶⁾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234~253면 참조

라 하여 "節義廉恥"가 없이 "奔競附會"를 일삼는 당시의 風土를 통박하면 서. 그 워인을 교학의 잘못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今者學校之政 不本於人倫 勸勵之方 只在於記誦詞章之末 記誦詞章 雖不可廢 化民成俗之本 實不在是

라고 논설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성리학을 보급하는 일만이 교화를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훈척세력의 학풍 을 공박하고 그들의 집권이 失政이 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教化之不明 由於導率之失其道耳

라 한 것도 이러한 뜻을 지닌 것이겠는바, 이 여섯째 항목은 그들의 저 변세력의 확대를 곁들여 企圖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일곱째로 거론한「刑獄不可不慎」역시 "制之於外"의 道로써의 刑政을 의논한 것이라기 보다는 훈척정치하에서의 濫刑 비판과 아울러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형옥의 원리론을 논술하면서 그 잘못된 사례로써 사림의 被禍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數十年來 土林之禍 反覆屢起 土大夫殞越於形戮者 曾不知其幾人也 若其 罪負關重 情狀著白 王法所不可膩則已矣 其間豈無非其罪而被重典 抱深冤 於冥冥之中乎(如己卯年趙光祖・金淨・奇遵 及儒生洪順福等 皆死於構陷 袞・貞・沆之所爲也 壬辰年生員李宗翼以上疏雜陳 乙未年進士陳宇以巷議 被斬 金安老之所陷也)

즉, 기묘사화를 비롯한 이후의 諸種 獄事가 모두 훈척세력의 모함에서 빚어진 冤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들을 "伸雪幽冤"하는 것이 또한 "弭災之一道"가 되리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여덟째의 「奢侈不可不禁」은 앞서 거론한 「民隱不可不恤」의 (2) 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勳貴層의 사치와 이를 본따는 집권관료들의 好 奢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近來王子第宅 務極宏大 爭尙華侈 毀撤民家 橫亘閭閻 高棟層梁 侔擬宮闕 以至婚姻之禮 車服什器之具 莫不極其華靡 士大夫之家 又從而慕效 室屋 之大 婚禮之侈 傷財僭分 罔有紀極 弊將難救

라 하여 王室·戚族과 사대부의 奢風이 극도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今之奢侈 固百弊之源 而其源在於宮禁

이라고 그 원인을 宮禁의 不嚴에 두면서 그 폐해가

邦本之凋瘁 府庫之虛竭 皆由於此 亦足以起怒而致災

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러한 奢風 이 止息되어야만 天怒의 災變을 면할 수가 있고, 또 백성이 康寧하고 국고가 충실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니, 이에는 그들이 예로 들고 있는 孝寧大君의 경우. 즉.

往者 有宗室孝寧大君 性頗謙素 厭處華室 嘗構草室 恒處其中 終能壽延九 袤 子孫蕃衍 比近事之明驗也

라는 것과 같은 소박한 天福思想이 그 저변을 이루고도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종에게 留心할 것으로 청한「諫靜不可不納」은 앞서 거 론한「致中和」나「紀綱不可不正」 및「人材不可不辨」과도 직접 관련되 고, 또 중복되기도 하는 것으로써, 군왕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성과 公 論的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황과 그 合疏者들은 人主不能自聽 必合衆聽而爲聽 不能自明 必合衆視而爲明

이라고 諫諍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이어서 종래 훈척정치하에서 위축되 었던 公論相을 다음과 같이 들면서 그러한 전철의 반복이 다시는 없도 록 헌의하고 있다.

頃者 求言之後 上書者(指己亥年韓山郡守李若氷上疏) 偶觸忌諱 輒欲加罪 至命三省而推鞫 或有系賤而言事者(指庚子年老人韓碩上疏) 以爲欲亂朝廷者教之 是以求言爲穿於國中也 各陳所懷 容有不當之論 人君但當擇其善而用之而已 豈宜加怒於妄言之人乎 諫者 非人君之利 乃國家之福也

그런데 그들의 위와 같은 자유롭고도 광범한 간쟁·진언의 保障要求 는 단순히 군왕의 자청·자명이 不能하다는 원리론적인 이유에서 보다 는

頃者 國柄落於奸手 危亡在於朝夕 人莫敢進一言以觸之者 以此也

라고 하고 있듯이, 훈척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보장요구가 현실적으로 더욱 절실하였던 데서 역설되고 있는 바 없지 않은 것이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은 이황을 포함한 일군의 성리학파의 시무소는 확실히 유가적인 이상정치론에 바탕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가의 왕도정치를 표면상 내세우고 있었던 당시 정계에서 이론적으로 이를 공박·비판할 여지는 거의 전무한 것이었겠다. 중종이 이 시무소에 대하여

今此上疏 再三觀之 一綱九目 皆合於道 當加省念 以答天譴?)

이라고 批答을 내린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 였으리라 이해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致中和」를 비롯한 원리론·이상론에 너무나도 치우 쳐 있었고 (기묘사화 이래로 그들이 정계에서 지향한 바를 들어내주는

⁷⁾ 中宗實錄 권95 中宗36년 4월 戊午條.

구체적인 일례가 되기도 하겠다), 또 이에서 자연 아직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훈척세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아울러 그들 스스로의 진출·집권의 기도가 곁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의 실현이란 거의 무망하기도한 것이었다. 이 시무소가 상달된지 이틀 뒤 朝講때 侍讀官 宋世珩이시무소에 대한 중종의 구체적인 구상을 묻자. 중종이

……將欲延訪大臣 以上疏之意講究 而有可行者 則當爲擧行也8)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했던 실정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성리학파의 사림세력은 이 시무소를 올린 얼마 뒤에 곧 정계로부터 다시 몰려나고, 大尹·小尹의 훈척정치가 재현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지적한 바 고질화된 제폐해는 더욱 심화·확대되어 갔다. 성리학파가 집권하게 되는 선조초에 이르러 그들의시국관이 보다 심화된 위기의식을 들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 였겠다.

선조 원년에 대제학의 직임을 받고 다시 출사한 이황도 당시의 사회를 위기에 찬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가 동년에 선조에게 올린 時務六條疏와, 경연에서의 啓箚은 이러한 그의 시국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육조의 시무소9)는 「重繼統以全仁孝」「杜讒間以親兩宮」「敦聖學以立 治本」「明道術以正人心」「推腹心以通耳目」「誠修省以承天愛」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핀 1綱 9目과 대동소이한 것인 바, 선조가入養・承統한데서 우선된 "繼統"의 1目을 제외하고는 杜讒(宮禁) 聖學, 明道(立綱・敎化),推腹(納諫・辨人),修省(謹祭・禁奢)의 5目이 모두 그 논지의 전개에서 훈척정치에 관한 비판・공박만을 거의 제외하고 있을 뿐, 중종조의 시무십조소의 내용을 그대로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⁸⁾ 동상 中宗 36년 4월 庚申條.

⁹⁾ 주2 참조.

이황을 포함하는 성리학파가 집권하였던 당시에 그의 시무소가 중종조의 시무소와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같은 사실은 그와 그들이 지향한 바가 아직 이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 주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시국관이 보다 심각한 위기의식에 바탕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도 있는 것이겠다. 이것은 그가 이 시무소를 끝맺으면서 선조에게

勿以爲卑近而不足爲 勿以爲迂闊而不必爲 必先以首二條爲本尤勤勵不息於 聖學之功 毋欲速 毋自畫

라는 근본적이고도 점진적인 정치자세를 당부하고 있는 데서, 또 이에 뒤이어 올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経筵啓箚(戊辰一)에서 익히 살필수 있는 것이다.

이황의 經筵啓箚¹⁰⁾는 軍士蘚復論을 개진한 것으로, 簽兵을 위한 搜 戶括丁의 시행을 연기하자는 데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는 이 啓箚의 서 두에서

國之大事 因在兵戌 今者 軍卒消耗 名存實無 內外皆然 搜兵補闕 在所當 急 不可以民之怨恣而停罷

라고 하여 搜丁簽兵이 금일의 급무임을 익히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한편, 그는 오늘날의 사회가「顚仆者未起 呻吟者未絶」하고 있는 극악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도 간과하지를 않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民之 怨恣」로 인하여 搜丁簽兵의 막중·막급한 일을 停罷할 수는 없다고 전 제하고는 있지만.

百穀不登 民何以充腹 木花掃無 民何以蔽体 飢寒切身 民無所顧籍 皆思破家流散

¹⁰⁾ 동상

하는 마당에서는 그 실효를 기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國家 亂亡之禍,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以爲不如及今姑停兵籍 以待年登民息而爲之

하는 것이「於義爲得 於事爲便」하다고 헌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황의 논의는 확실히 당시의 조선사회가 매우 危難한 처지에 처하여 있다고 인식하였던 데서 발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더우 기 뒤에서 論及하는 바와 같이, 당시 여진 및 왜인의 동태에 대하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던 그였던 것이다. 그가 여진 및 왜인과의 국교에서 가능한 한, 우호적인 통교를 유지하기 위한 양보를 헌의하고 주장하여 마지 않은 것도 內情에 대한 위기의식이

漢·魏之張角·葛榮 唐·宋之黃巢·方臘 皆何因而起乎 當時亦必有以如 臣之言 見笑於世者 使時君早憂而豫爲之所 則豈終至於覆敗乎

라고 이 啓箚에서 擧例할 정도로 깊이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V. 對外政策論

이황이 생존했던 시기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외관계에서 두드러진 사건이 없었다. 임진년(1592)에 왜침이 있기까지 16세기 一期를 통틀어 보아도, 사소한 변경에 지나지 않는 사건들이 간혈적으로 돌발하여 왔던 것이다. 왜인의 作亂 경우, 중종 5년(1510)의 삼포왜란과 명종 10년(1555)의 을묘왜변이 비교적 요란한 편이었고, 야인(여진)의경우는 성종 22년(1491)의 우디거(元狄哈)의 造山里 侵寇에 대한 許琮의 응징적인 정벌이 있은 이래로는 이황 사후에 尼湯介의 侵寇가 있기까지 아주 소규모의 作亂이 3·4차 있었던데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황은 대여진·왜와의 관계에서 커다란 우려를 자주 표하고 있다. 例하면, 명종 9년(1554)에 黃俊良에게 보낸 답서에 서

但今南北巨患 不朝即夕 而環顧在我 無一可恃 則山林之勢 亦豈必也耶11)

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을묘왜변 당시(1555)에 趙士敬에게 보낸 답 서에서

方今巨寇侵軼 國無備禦之策 意不知稅駕之所 痛歎奈何12)

라고 한 것을 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가 위와 같은 사소한 외인의 作亂을 한결같이 「巨患」・「巨寇」로 표현하면서 우려를 나타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상기한 글로써 보면, 당시의 備禦策과 상태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빈약하였다는 데 그 까닭이 있었으리라 이해된다.

사실, 16세기 조선조의 방어태세는 상술한 바와 같은 훈척정치의 부패로 인하여 극도로 허약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富實하였다는 경상도에서의 군사가 총 10만을 헤아렸었는데, 실제로는 겨우 2만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정도로¹³⁾ 군사의 流亡・避役이 극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본래의 방어체제인 오위・진관편제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잔존군사를 전란지로 모두 집결・대체케하는 이른바 "제승방략"의편법이 임기응변으로 쓰여지고 있었다.¹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하나의 편법적인 조치였을 뿐, 정상적이고도 본격적인 체제는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임진년의 대규모 왜침을 당하여 이제껏 소규모의 전쟁

¹¹⁾ 退溪先生文集 권19 書, 答黃仲擧條.

¹²⁾ 동상 권23 書, 答趙士敬條.

¹³⁾ 中宗實錄 권15 中宗7년 2월 戊戌條에 「慶州府尹李繼福曰······慶尚一道軍士十 餘萬 而親往觀之 則纔二萬餘人······」이라고 보인다.

¹⁴⁾ 前揭 「한국군제사」296~302면 참조.

에서 그런대로 효력을 나타냈던 "제승방략"이 무력·무효하였던 것도 이까닭이었겠다. 이황이 나타냈던 우려도 바로 이러한 내정상의 약점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옳겠다.

이러한 의식에 바탕했던 이황의 대외정책론은 중종 39년(1544)에 올린 그의 「乞勿絶倭使疏」15)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소는 그 해에 왜인의 사량진 入寇가 자극이 되어 조정이 삼포일대 왜 관의 왜인들을 축출하고 왜와의 통교를 단절하는 보복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삼포의 왜인들과 倭使가 통교의 복구와 왜관에의 거주를 復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온데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는 이 상소에서 당시조정의 강경론과는 달리 소극적인 온건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以禽獸畜禽獸 則物得其性 以夷狄待夷狄 則夷安其分 故王者不治夷狄 春 秋錄戌 來者不拒 去者不追 治之以不治者 乃所以深治之也

라고 夷狄을 대하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今以蛇梁竊發之事 較之於彼(彼는 漢 高祖時의 凶奴의 侵寇를 뜻함)雖 曰 同歸於罪 而輕重則有間矣 若之何不許其自新之路 而構禍於吾之赤子乎 ……故自古帝王御戌之道 以和爲先 其不得己而至於用兵者 爲其除禽獸 逼人之害 害去則止 何必甚之而生怨 以致搏噬之患哉

라 하여, 스스로 용서를 빌며 왜관에의 거주와 통교를 청하여 오는 왜 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조선측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적과의 和親之道의 주도권을 올바르게 행세하는 길임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抑又有一說焉 與夷狄和親之道 固當有操縱伸縮可否之權之勢而此權此勢 必常令在我 而不可令在彼也 臣亦知朝廷之意 以此爲重 而爲是堅拒之議矣 然有罪則絶之 自新則許之 此正權勢之在我 而施當其可也 當其可之 謂時

¹⁵⁾ 주 2 참조.

何可違也 有其權 忘其勢 而無心以處之 則彼必以爲大德 而感悅於其心 相率而投款矣 是所謂化之也

그러나, 이황의 이러한 주장·건의에는 또 다른 이유가 위와 같은 원칙론에 못지않게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것은 곧 당시 의 내실의 불비와 여진의 세력성장을 자각한 점이었으니, 그는 앞서 논 술한 바와같이 당시의 내정이 자칫 잘못하면 "亂亡之禍"를 입을 정도로 부실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하였던 데서 여진과 의 構釁에도 크게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상소에서

國家已與北虜構釁 安知彼中不有諸酋之桀驁 切齒報復而謀犯邊守者乎 設使南北二虜一時俱發 則榜東而西掀 衛腹而背潰 未識國家將何所恃而能 辦此乎 此臣之所大憂也

라고 하면서,「東南財賦之所出 兵力之所在 尤不可不保」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왜와의 충돌—특히 이로 인한 경상도 일대에서의 혼란—을 가급적 피하기를 바라는「乞勿絶倭使疏」의 현실론의 바탕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황은 구체적으로 중종에게

國有大赦於汝 亦不可無鴻恩之及 故特許再請云云

하면서 왜의 청을 수락하여 줄 것을 헌책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국가의 체통을 세우고, 아울러 왜로부터의 변우를 덜며, 여진의 침구에도 창졸간에 覆敗하는 患을 면할수 있는 現下의 최선의 방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방편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益脩人事於根本之地」하여 내실을 갖추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급선무로 믿어마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황의 대외정책론은 곧 내정과 밀착된 것으

로, 그의 軍士蘇復의 주장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그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록 단편적 인 논의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폐정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또 그 대안도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고 보겠다.

VI. 結 語

이제까지 우리는 이황이 남긴 몇가지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그의 시국관—시대의식—과 그가 지향한 바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첫째, 이황은 16세기 一期를 거의 일관하여 온 훈척정치가 조선사회의 피폐와 손상을 가져온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의 체통을 지킬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온건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면서, 훈척정치의 종식을 통해 내실에의 勵進이 당면한 최대의 급선무로 믿어마지 않았었다.

둘째, 이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내정개혁의 지향은 유가적 왕도정치의 구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급진적·제도적인 개혁수단으로서보다는 점진적·정신적인 개혁의 수단, 즉 군왕의 현철군주화와 신민의도학적 교화를 토대로 한 자발적·자생적인 실현에서 추구되고 있었고, 또 국민의 처우개선—생활향상—이 항상 전제로 되고 있었다.

셋째, 이황을 포함한 일군의 성리학파들이 훈척세력에 의하여 정권에서 배제되었던 당시, 현실개혁의 구체적 제안에 보다도 도학의 이론적체계화에 더욱 깊이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훈척세력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집권할 경우의 경륜과 자세를 연마·정돈한 실질적인 현실참여 작업이었다고 이해될 수 있었다. 그들의 시정론이 왕도정치의 이론적 전개에 곁들여 훈척세력의 비판을 통한 스스로의정계진출이 기도되고 있는 바가 이를 뜻하는 일단으로 보이고 있는 것

이다.

끝으로, 이러한 이해에 덧붙여서 이 지면을 빌어 한가지 언급하고자한다. 그것은, 선조의 즉위로 훈척정치가 종식되고 성리학파의 집권이확고하여지면서 성리학파가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로 분열・成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단순한 이기설에 대한 견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새로히 위정자의 위치에 오른 그들 사이의 정책의 차이에서도 연유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점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이학·도학에 크게 경주한이황과 그 일파가 대훈척투쟁에서 다져온 치자의 양심을 강조하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자 한데 대하여, 기론·경론을 보다 중요시한 이이와 그 일파가 이황류의 보수적 입장을 벗어나 經世의 術을 현실적으로적극 모색하고자 한데서 빚어지지 않았나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파·분당은 그것이 정책상의 대립이었던 데서, 또 일당의 전제를 제약할 수 있는 견제세력의 형성이었던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하리라 생각한다.